

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1. 31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

양문석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안건(의결-가-나-다)과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(의결-라)에 해당됨.

바. 의결사항

1)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- (주)지에스홈쇼핑 등 10개사 - (2011-06(서)-014)

○ 「방송법」 제17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1년 4월 18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모두 재승인 하되, 케이티하이텔(주) 및 화성산업(주)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① 재승인 대상 10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명단

신청 사업자명	방송채널명	대표자
(주)지에스홈쇼핑	NS T-Shop	도상철
(주)씨제이오쇼핑	CJTmall	이해선
(주)우리홈쇼핑	롯데티몰	신 현
(주)농수산홈쇼핑	GS SHOP 리모콘	허태수
(주)현대홈쇼핑	현대홈쇼핑Tmall	정교선, 민형동
에스케이브로드밴드(주)	B TV 쇼핑	박인식
케이티하이텔(주)	Paran쇼핑	서정수
(주)아이디지털홈쇼핑	아이디지털홈쇼핑	손창록
(주)티브이버룩시장	TV 버룩시장	주원석
화성산업(주)	동백TV몰	이인중

② 케이티하이텔(주) 및 화성산업(주) 재승인 조건

- 재승인 후 2년 이내에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의 송출을 재개할 것

2)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(주)에스트리 등 4개사 - (2011-06(서)-015)

○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에스트리 등 4개사의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등록 및 변경등록하기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< (주)에스트리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에스트리 (S.tree)	다큐멘터리 (텔레비전)	손현하	손현하 (70%)	5.5억원 (5.4억원)

< (주)성균관유교방송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유교방송	종교(유교) (텔레비전)	최근덕	최근덕 외 1 (100%)	5억원 (5.1억원)

< 에이엑스엔코리아(유)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에이엑스엔 (AXN)	엔터테인먼트 (텔레비전)	전용주	(주)씨유미디어 (51%)	10억원 (9.9억원)

< (주)오리엔탈콘텐츠그룹 변경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에이비오 (ABO)	텔레비전	방송분야	무협영화	교육

3)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- 한국방송공사 - (2011-06(서)-016)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위원회가 명한 '추적 60분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'11. 1. 24)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원심 집행정지 신청('11. 1. 25) 건에 대해, 원안대로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의결함.

※ 원심 결정 내용 :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9조(공정성)제2항 및 제3항, 제14조(객관성)를 위반한 KBS-2TV 「추적 60분」 프로그램에 대해 "경고" 조치함

4) 「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」 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06(서)-017)

- 「전파법 시행령」 개정('10. 12. 31 공포)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」 (고시)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o 주요 내용

- ① **(할당신청)** 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할당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신청서,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 등을 제출
 -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 시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, 재정적·기술적 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토록 하되,
 - 경매의 경우에는 심사절차가 없으므로 법인 개요, 망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사항과 신청 적격여부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만 작성토록 간소화
- ② **(신청 적격여부)** 할당신청이 공고사항에 적합한지,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및 기간통신사업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법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
- ③ **(심사기준 및 방법)** 20명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(50점), 재정적 능력(25점), 기술적 능력(25점)을 심사하되,
 - 재할당의 경우에는 주파수 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과거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주파수 이용실적을 포함하여 심사
- ④ **(할당대상법인 선정)** 심사사항별 60점 이상, 총점 70점 이상 법인 중 고득점 법인을 할당(재할당)대상법인으로 선정하되,
 - 재할당의 경우, 선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'조건부 재할당'을 할 수 있도록 함

※ 경매의 경우에는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가격경쟁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
- ⑤ **(할당통지)** 할당대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해야 하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할당통지서를 교부
 - ※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동 기한까지 허가를 받은 후 최종 할당 통지